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13 선고 2019가단5367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(망 D의 상속인)

2. E(망 D의 상속인)

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

변론 종결2019. 7. 16.

판결 선고2019. 8. 13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C은 33,577,651원 및 그중 30,381,366원에 대하여,

나. 피고 E은 22,385,100원 및 그중 20,254,244원에 대하여,

각 2018. 7. 1.부터 2019. 7. 9.까지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법령의 적용

피고들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국식

별지